

2025년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5년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5년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 **공고사업명:**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
- **신청기간:** 2025년 4월 28일 부터 5월 16일 까지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원본서류를 동봉한 시범사업 우편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 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사업별 추가 서류는 담당자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064)760-7531~7533

- 주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1층 기술지원조정과 기술지원팀

- 대표 이메일: betty010693@korea.kr

※ 이메일을 통해 제출시 반드시 제출 확인 필요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등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의 경우 현지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업명				신청 면적	㎡
신청 자	생산자 단체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배우자	생년월일		휴대폰	
	배우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배우자	생년월일		휴대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목			재배면적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적	㎡
사업비 (천원)	계		보조	자담	
<p>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p> <p>붙임 사업계획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p> <p>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p>					
<p>※ 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졸업증명서(농과계 학교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 영농승계확인서(필요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골대학, 농협), 농입연상 수상 사본(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 별표 3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안)

사업신청자

성명	주소	소재지	신청면적	작목
			㎡	

공통항목 : 40점

조사항목	조사내용	배점	점수	확인내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20), 5백만원 미만(15), 10백만원 미만(10), 15백만원 미만(7), 20백만원 미만(5) 	20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사업예정지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4) - 농로변(2) - 기타(1) 	4		
영농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3) - 경영체 등록 3~4년(2) - 경영체 등록 1~2년(1) 	3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5)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3)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3), 도·시(2), 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 품목별연구회 임원(1) ○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1) 	3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소계		40		

< 별표 4 >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어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